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87010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보험

피고, 상고인 학교안전공제회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

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고 한다)의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 피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와 해당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구상 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는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등의 해석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가.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학교안전법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피공제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그 피공제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구상책임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최종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법이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주로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적정·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학교안전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배상이나 보상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라. 나아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의 관계를 살펴본다.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참조). 따라서 학교

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 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까지 구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학교안전법이 그러한 피공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넘어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자로서는 그 피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공제급여라는 재원으로 자신이 원래 져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의 피공제자인 소외 1이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인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후 소외 1의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가 정하는 보험자대위에 의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가 정하는 보험자대위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손해가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나 소외 2는 이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인 소외 2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한다거나 가해자인 소외 1이 부당하게 면책되는 등 보험자대위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소외 1은 먼저 소외 2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소외 1의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진다고 보는 이상 설령 먼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학교안전법상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